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15
----------	-------

발의연월일 : 2026. 7. 13.

발 의 자 : 박상혁 · 김한규 · 김동아
문금주 · 이인영 · 정준호
이정문 · 강경숙 · 허영
한민수 · 김주영 · 김영환
박균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징금의 감경 사유로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수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자발적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체계 구축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확히 예시하여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5항제10호).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445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5항제10호 중 “자율적인”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 및 그 밖에 자율적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445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 ④ (생 략)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 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1. ~ 9. (생 략) 10. 개인정보 보호 인증, <u>자율</u> <u>적인</u>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11. (생 략) ⑥ ~ ⑫ (생 략)	법률 제21445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개인</u> <u>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u> <u>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 및</u> <u>그 밖에 자율적인</u>----- ----- ----- 11. (현행과 같음) ⑥ ~ ⑫ (현행과 같음)